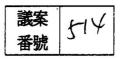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 1994. 11. 提出者: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現行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中 備品區分基準, 官暑當經費 物品稟議要求, 不用品賣却 鑑定評價基準 및 物品管理 法定帳簿의縮小등을 調整하여 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能率을 圖謀하고 자함.

2. 主要骨子

- 가. 官暑當經費로 物品을 買入·修理·製造코자하는 경우는 物品稟 議要求書 作成이 省略토록된 但書 條項을 削除함(案 第8條)
- 나. 現行 不用品賣却 鑑定評價基準이 帳簿上 取得 價格이 單價 5百萬원以上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帳簿上 取得價格이 單價 1千萬원以上으로 함(案 第17條 第4項)
- 다. 物品管理 法定帳簿中 消耗品 台帳 삭제(案 第24條 第1, 2項)
- 라. 現行 備品基準이 內容年數 1年未滿 일지라도 取得單價가 5 萬원以上의 物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內容年數 1年未滿 일지라도 取得單價가 10萬원 以上의 物品으로함(案 別表 1)

3. 參考事項(關聯法規)

0 地方自治法

第134條(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 讓與, 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0 地方財政法

第100條(物品의 處分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使用 또는 處分할 必要가 없거나 使用 또는 處分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不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으로서 賣却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때 또는 賣却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③物品은 賣却을 目的으로 한것이거나 不用의 決定을 한것이 아니면 이를 賣却할 수 없다.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별표 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편	78	74		안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	품을 매입·수	제8조(물품 매	입둥의 요구)	물품의 메입·수	
리 ·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주관과장	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 수리 · 제조품의요구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	 ・	a)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리하다 .	¥		-	
제17조(불용품 의 매각)		제17조(불용국	뜻의 매각)		
①~③ (생 략)		①~③ (변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	()			
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겨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증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	간가 5백만원	장	부상 취득가격	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	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	가) 감정평가				
역을 참작하여야 한다.				Ţ.·	
⑤~⑧ (생 략)		⑤~ ⑧ (₹	변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 납원은	제24조(물품	출납원의 장부)	①	
규칙이 정하는 서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1		v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2		·	
3. 물품 카드 등록부		3			
4. 소모품대장	er f	<삭	제>		
5. 도서대장	4 .	4. (현행 7 —	#5호와 같음)	e e	
					

현	행	개	정	안
⑦ 분임 물품출 Ⅰ	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②		
14	납 및 운용 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도서대장 -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				
남 및 운용카드에 정 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 .	
	± ±			
[별표1] 필품 의 품종상태 구분		【별표1】 물품 의 품종상태 구분		
O 물품의 중류(생략)		○ 물품의 종류(현행과 같음)		
O 품종구분 기	₹	0 품종구	분 기준	
(1) 비품 -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	(1) 비품	· - 0	
,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5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			②	
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10만원
,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③	
;	지정한 물품			g.
(2) 소모품(~	생 략)	(2) 소모	품(현행과 같	≙)
		1		
	*		38.	
	ė			ž.
	e e			8
			¥	
				·
· .		1.		
3	* * * * * * * * * * * * * * * * * * * *		• 1	
1 .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4년12월27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2월 7일 대전직할시장

2. 회부일자 : 1994년 12월 12일

3. 상정일자 :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1994. 12.

27) 상정, 심의,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1. 제 안 이 유

현행 대전직할시 물품관리조례중 비품구분기준, 관서당경비 물품 품의요구, 불용품매각 감정평가기준 및 물품관리 법정장부의 축소 등을 조정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는 물품 품의요구서 작성이 생략토록된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제8조)

- 나. 현행 불용품매각 감정평가기준이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 가 1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17조 제4항)
- 다. 물품관리 법정장부중 소모품 대장 삭제 (안 제24조 제1, 2항)
- 라. 현행 비품기준이 내용년수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내용년수 1년미만 일지 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함 (안 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현행 대전시의 물품관리 방법 및 절차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품구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서당경비의 물품품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불용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운 영상 현실성이 없는 소모품 대장정리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각종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품의 요구서에 의해 요구를 해야 하고,

다만 관서당경비는 주관과의 자율에 의하도록 예외로 하였는데, 무분별한 회계운영의 통제와 회계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도 물품구입시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임.(안 제8조)

둘째, 불용물품의 매각에 있어서 불용처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을 5백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불용품에

대한 구매력 저조로 물품평가에 따른 감정수수료만 소비되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어서 이의 개선측면에 조정한 것이라 하겠음.

셋째,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여야 할 법정 장부중에 관리의 필요성이 없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소모품대장을 삭제 하는 것임. (안 제24조)

그리고 안 제5조와 관련한 별표 1의 비품구분 기준에 있어서 현행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이면 비품으로 보았는데 그동안 물가인상이나 비품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1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 하겠음.

Ⅳ.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